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760호 2026. 10. 2.(금)

고시 · 공고

- 「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」
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- 도로지정(건축허가, 신고)공고 6
-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(소각) 주변영향지역 결정·고시 7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「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
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」

입 법 예 고

「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. 10. 2.

목 포 시 장

1. 조 례 명 : 「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
조례 등 일괄개정조례」

2. 개정이유

- 존속기한 만료 대상 기금들(7개)의 설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고, 효율적
관리·운용을 위하여 대상 기금들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
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각 기금별 조례의 존속기한을 “2031년 12월 31일” 까지 연장

4. 조례개정(안) : 별 첨

5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(존속기한)

6. 관련부서 의견

- 예산사항 : 해당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(심의)대상 여부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기간 : 2026. 10. 2. ~ 2026. 10. 21. (20일간)

8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9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1일 18:00까지 목포시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전자메일, 방문

다.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목포시청 기획예산과(예산팀)

- 주 소 : (우 58613) 전남광주 목포시 양을로 203 (용당동)
- 전 화 : 061) 270-3483, 팩스 : 061) 270-3578
- 이메일 : imsungh@korea.kr

10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조 (<http://www.mokpo.go.kr>) 또는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☎061) 270-348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 「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」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도로지정(건축허가·신고)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26. 10. 1.

목 포 시 장

1. 제 목 : 도로지정(건축허가·신고) 공고
2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
3. 공고기간 : 2026. 10. 2. ~ 2026. 10. 16.(14일간)
4. 공고내용

일련 번호	대 지 위 치 (목포시)	건축주 (동의자)	허가번호	도로지정 현황			이해관계인 동의여부
				길이 (m)	너비 (m)	면적 (㎡)	
1	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동 723-3 외 2필지	유한회사중*환경	2026-건축행정과-증축신고-4	13.5	5	78	동의

※ 지정도로의 형상에 따라 길이,너비 등의 수치가 부정확 할 수 있음.

5. 공고방법 : 시보, 게시판, 홈페이지
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건축행정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공고 기간 내 건축행정과(☎061-270-34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· 고시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(소각)의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· 고시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목 포 시 장

1. 폐기물처리시설(소각)의 명칭 및 설치기관

- 명 칭 : 목포시 자원회수시설
- 설치기관 : 목포시

2. 폐기물처리시설(소각)의 위치 · 규모 및 내역

위 치	규 모		시설용량	비 고
	부지면적	건축연면적		
목포시 대양동 703번지 일원	15,786㎡	8,810㎡	220톤/일	- 연소방식 : 스토커 방식

3. 폐기물처리시설(소각)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(예정)일

- 착 공 일 : 2025. 2. 5.
- 준공일(예정) : 2027. 8. 4.

4. 폐기물처리시설(소각)의 운영기간

- 사용개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시까지

5.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및 면적, 지정기간

○ 위 치

- 직접영향권 : 해당지역 없음
- 간접영향권
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결과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른 지역



○ 면적 : 915,819m²

○ 지정기간 : 고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시까지

6. 기타

○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자원순환과(☎061-270-8589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